

청주지방법원 2021. 10. 27 선고 2020가단39702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국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9. 29.

판 결 선 고 2021.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8. 7. 19.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청주지방법원 2018. 10. 15. 접수 제1010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4. C과 대출(한도)금액을 30,000,000원, 대출종류를 가계일반자금, 대출기간을 1년, 변제방법을 만기일시상환으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위 대출한도금액을 26,300,000원으로 감액하고, 한도거래기한을 2019. 11. 7.로 정하여 한도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이 위 한도거래기한까지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33600호로 위 대출원리금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0. 5. 28.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27,803,233원 및 그중 26,300,000원에 대하여 2020. 5. 21.부터 2020. 6. 8.까지 연 10.6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20. 6. 8. C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6. 23. 확정되었다.

다. C의 부친인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19.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상속지분 3/15)과 자녀인 C, F, G, H, I, 피고(각 상속지분 2/15)가 있다.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10. 15.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1')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 10. 15. 접수 제101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서원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J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6,300,000원을 대출받았는바, 비록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한 시기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이기는 하지만 이미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자체는 발생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에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C이 일반채권자의 채권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과 오래 떨어져 지냈고 왕래가 거의 없어 C의 경제적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1) 이 사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등기원인에 '2018. 7. 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기재에 따르기로 한다.